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채납자가 사망하거나 채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채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고액·상습 채납자의 수입물품의 채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채납처분 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채납징수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개선

- 1)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8 신설).
- 2) 승계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대한 채납처분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제19조 개정).

3) 체납처분절차 등을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등의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함(안 제19조 개정).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제7조의6 개정)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2.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부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의3(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된 이후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된 이후 납부 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채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채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채납자가 사망한 후 채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채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채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채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중 “같은 법 제26조, 제2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징수공무원”으로, “국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본다.

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7조의6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부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납부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u></p>
<p><신 설></p>	<p><u>제9조의3(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된 이후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u></p> <p><u>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된 이후 납부 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u></p>

<신 설>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

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
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
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
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재·부과금”으로 본다.

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
부터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7